

**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** (제74조제2항 관련)

| 교육의 종류 | 교육 내용   |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 | 교육 시간           |
|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기본교육   | 감리업무 관련 규정·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              |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시간 이상         |
| 전문교육   | 감리 총괄업무의 수행,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|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시간 이상         |
| 계속교육   |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                    | 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| 3년마다<br>40시간 이상 |